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1
----------	-----

2022년 9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2년 8월 29일
- 다. 회부일 : 2022년 9월 2일
- 라. 상정일 :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9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상훈)

###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단 재난현장 설치(안 제7조)
-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2. 8. 18. ~ 8. 22.)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과 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세부 운영사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조).

※ 본 제정조례안은 제308회 정례회에 제출(2022.5.25.시장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 제정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시 민관협력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동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재난자원관리과)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계획」 및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을 요청(2020.3.12.) 하였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2021.10.1., 2022.4.14.)한 사항임.

-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차 요청한 바 있음(2022.8.8.)

○ 다만, 대규모 재난 발생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지원하며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을 사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본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책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구성, 단장 임무 등으로 조문을 구성하고 있음.

○ 다만, 명확한 정의 규정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입법 체계 및 절차상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의 규정은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적용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책무)	-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

제3조(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
제4조(구성)	-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
제5조(단장 임무)	-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
제6조(실무팀의 편성)	-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음.
제7조(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설치 근거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또한, 서울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각 자치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지원단과의 역할 구분과 협력 관계 방안 및 관련 전문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재(2022년 9월 기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6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등 15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강북구, 관악구 등 6개 단체가 추진 중에 있으며, 강남구 등 4개 자치구가 미제정 상태에 있음.

[광역자치단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조례 현황]

광역시	세종	제주	대전	전북	인천	부산
제정일자	'20.7.15.	'21.4.14.	'21.12.29.	'22.4.15.	'22.4.21.	'22.7.6.

[서울시 자치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조례 현황]

○ 추진현황

구분	계	자치구
제정완료	15개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제정 추진 중	6개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제정 미정	4개	강남구,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은 설치 완료

○ 세부현황

연번	자치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 추진 현황	조례 제정 일자	비고
1	강남구	미추진		
2	강동구	조례제정 완료	2020.07.	
3	강북구	추진 중(준비)		하반기
4	강서구	조례제정 완료	2022.03.	
5	관악구	추진 중(준비)		
6	광진구	조례제정 완료	2020.12.	
7	구로구	추진 중(준비)		
8	금천구	조례제정 완료	2021.07.	
9	노원구	조례제정 완료	2020.11.	
10	도봉구	조례제정 완료	2021.05.	
11	동대문구	미추진		
12	동작구	조례제정 완료	2020.06.	
13	마포구	조례제정 완료	2020.12.	

연번	자치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 추진 현황	조례 제정 일자	비고
14	서대문구	조례제정 완료	2021.04.	
15	서초구	조례제정 완료	2020.11.	
16	성동구	조례제정 완료	2020.10.	
17	성북구	미추진		
18	송파구	조례제정 완료	2020.12.	
19	양천구	조례제정 완료	2021.02.	
20	영등포구	추진 중(준비)		
21	용산구	미추진		
22	은평구	조례제정 완료	2021.12	
23	종로구	조례제정 완료	2021.10	
24	중구	추진 중(준비)		하반기
25	중랑구	추진 중(준비)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는 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은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28조1)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책무규정에 대해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1)「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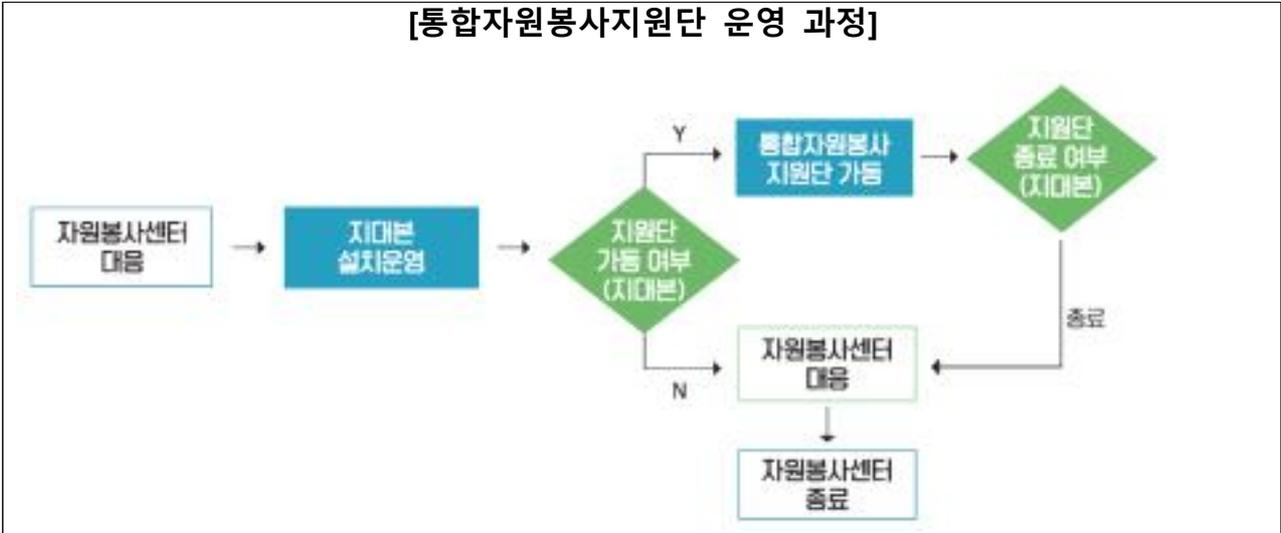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동 조항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울특별시시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소속으로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위한 사전 고려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부장’이라 하기보다 ‘서울특별시시장’을 직접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은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과정]



-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 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 여부, 이재민 발생과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3) 구성(안 제4조)

- 안 제4조는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있고, 단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려는 것임.

#### 안 제4조(구성)

-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공동단장일 경우 역할 분담 >**

구분	공무원 단장	민간인 단장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부서의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되 필요시 타기관·타단체장으로 조정 가능</li> </ul>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협조(재난부서, 시도 및 중앙에 지원 요청 등)</li> <li>•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 파악</li> <li>•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관리 및 필요 사항 발굴·지원</li> <li>• 지대본회의에 참여하여 재난상황 정보를 공유</li> <li>• 행·재정적 지원, 재난부서 협력, 재난관리 기금, 재해구호기금 활용방안 마련</li> <li>• 일일활동사항 보고 - (시군구⇒시도⇒행안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 상시적 재난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시 자원봉사단체 간 역할조정</li> <li>• 자원봉사 모집·교육·배치와 활동조정</li> <li>•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팀 편성</li> <li>• 자원봉사 필요인원, 활동분야, 필요 물품 등 산출</li> <li>• 일일활동상황 취합 및 정보제공 등</li> </ul>

- 다만,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의 경우 ‘행정국장’으로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한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본부장이 서울특별시시장인만큼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4) 단장 임무·실무팀 편성·지원단의 설치(안 제5조~제7조)**

- 안 제5조는 단장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sup>2)</sup>, 안 제6조는 지원단 내에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④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안 제5조(단장 임무)

-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실무팀의 편성)

-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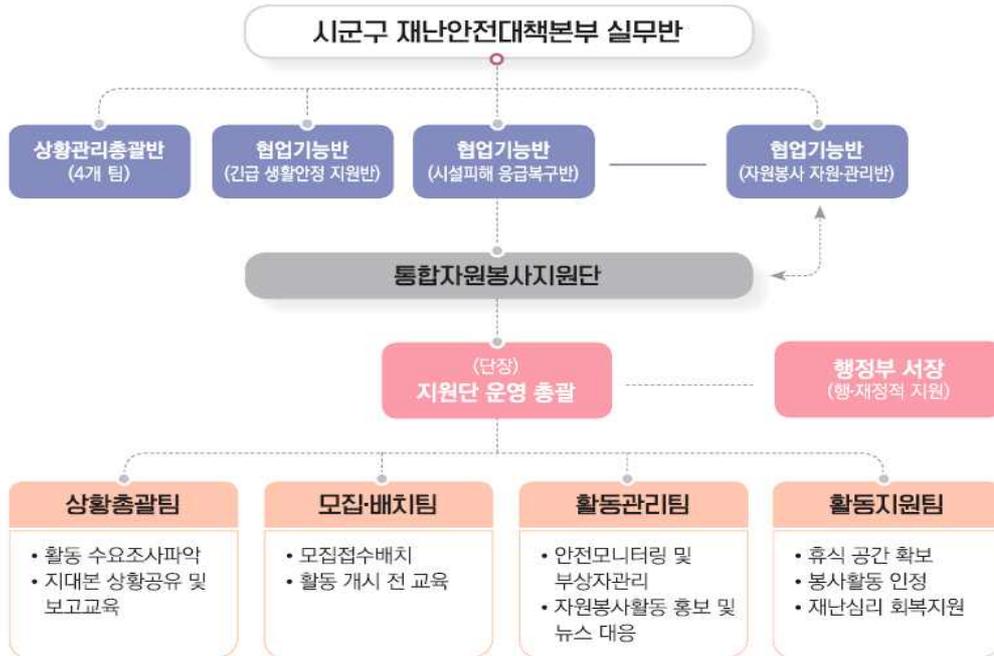
### 안 제7조(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안 제5조는 단장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단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안 제6조는 지원단에 실무팀 편성에 대한 사항과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업무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재난 유형·규모·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장 및 지원단 구성 단계간 협의 이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실무팀 구성시 자원봉사센터 외 관련 단체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실무팀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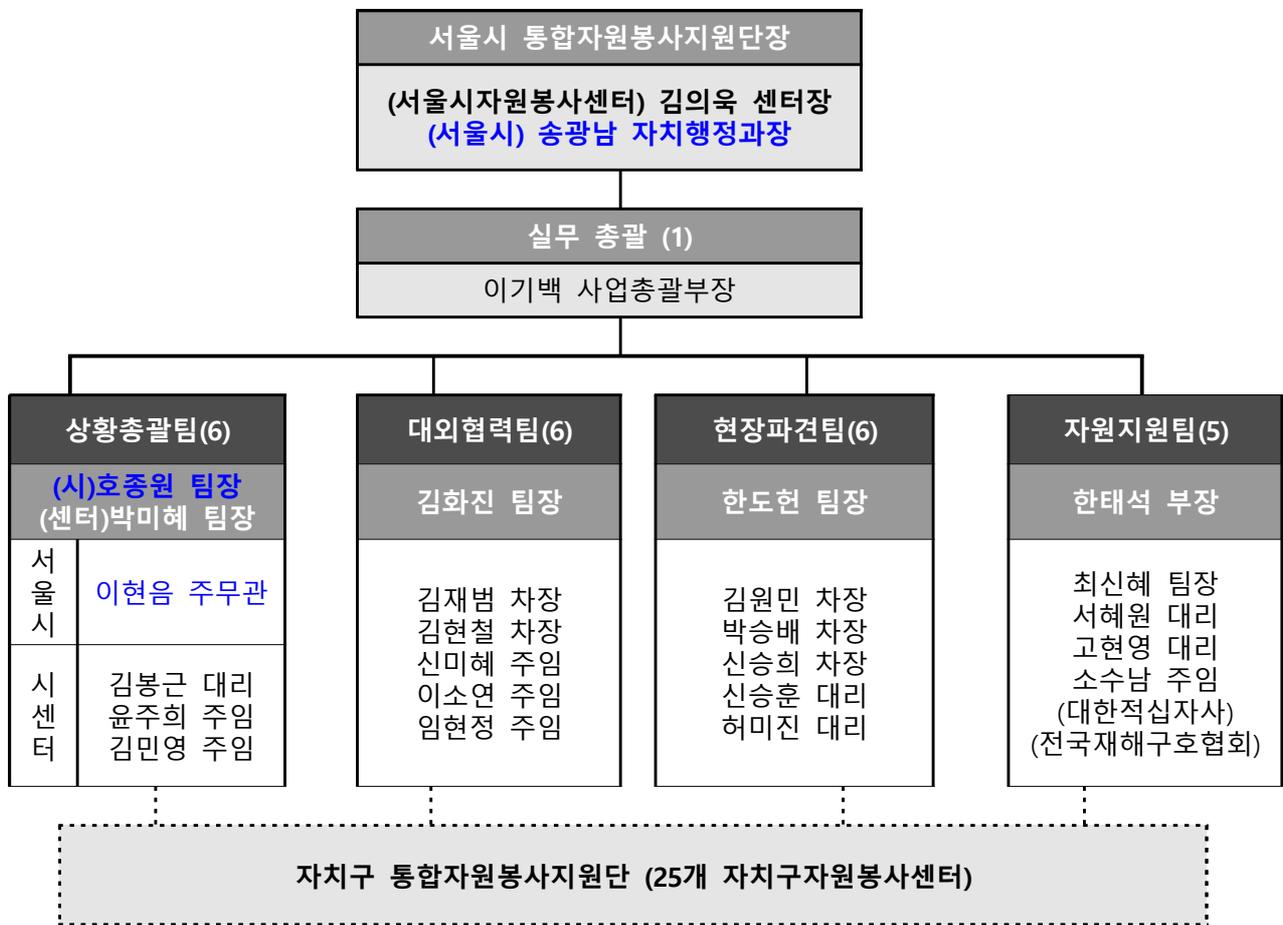
< 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구성(안) >

☑ 4개 팀 편제(예시)



- 실제로 ‘힌남노’ 태풍 재난으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도를 살펴보면 상황총괄팀의 일부는 자치행정과 공무원으로 하고, 실질적인 구성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서울시 공무원과 비영리기관인 자원봉사센터간의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로써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도 (2022.9.6.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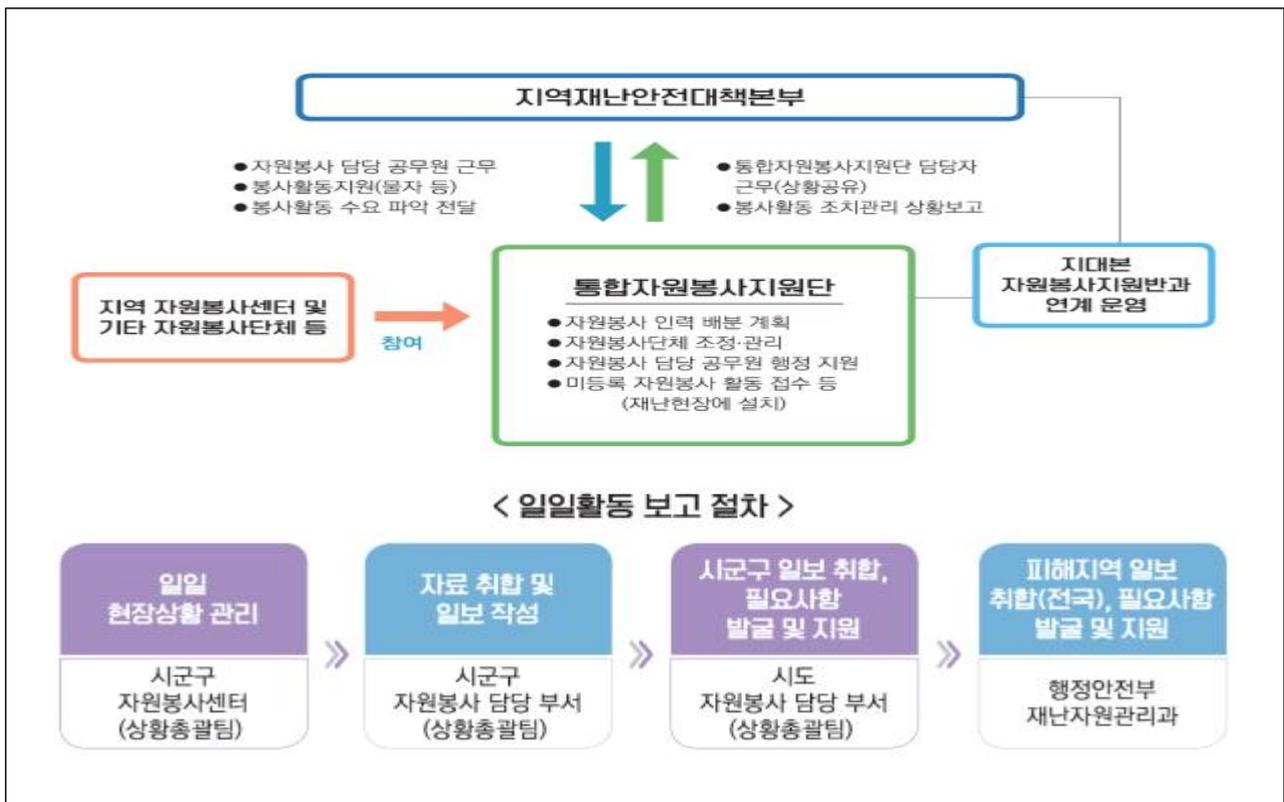


## 6)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안 제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에 대책본부의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시 적절한 판단을 위한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는 등 재난상황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 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 안 제9조는 단장은 자원봉사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사례 및 사진·영상, 자원봉사 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다만,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입장 측의 요구와 자원봉사활동의 수용하는 입장의 요구를 연결시켜,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평가 및 기록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8) 종합의견

- 동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인바,
  - 서울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지원할 재난과 이미 운영 중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지원단이 지원할 재난의 범위 및 역할, 협력관계 구축 방법 등에 대한 조정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

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